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류보완 접수

1. 추진개요

- **(접수기간)** '20.11.9.~11.30. * 온라인(11.9.~11.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접수장소)** 구청 및 읍면동 32곳 (세부장소 붙임 참조)

1 이의신청

- **(신청대상)** ❶ 부지급 문자통보 받은 경우 ❷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붙임 참조)

  *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

- **(신청방법)**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지자체 접수처**
- **(지자체 접수서류 확인 사항)**

신청유형	신청기한	제 출 서 류
부지급 통보 이의신청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서(제7호 서식) + 증빙서류
신청 불가사유 이의신청	~11.30일까지	• 공통서류 + 추가서류(붙임1 참조) • 이의신청서(제7호 서식) + 증빙서류

※ '신청불가사유 이의신청'의 경우, 최초신청에 해당하여, 공통서류·추가서류·이의신청서·증빙서류 일체 작성(신청인), 소진공검증단 송부 필요(지자체)

2 추가지급 신청(지급변경 신청)

- **(신청대상)** ❶ 새희망자금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 ❷ 다수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 받은 후 추가지급을 위해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변경신청서(제8호 서식) 제출

3 현장접수 신청서 서류보완

- **(신청대상) 지자체 방문신청후**, 소진공검증단으로부터 **추가보완 서류 제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서류)** 보완서류신청서(제9호 서식) 및 보완서류 제출

2. 기타

- **소진공에 접수**되면, **신청자에게 접수 및 검증결과 문자 공식통보**

붙임1 신청서식

□ 공통서류

구 분	증 빙 자 료
①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입금계좌 정보 등 기재
② 대표자 및 계좌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③ 각종 동의서 제2·3호 서식)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추가서류 (신청 유형별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구 분	증 빙 자 료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관련 직종 사업체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자가진단표(붙임 제6호 서식) * 신청자 명단은 고용부에 통보하여 확인 예정이며, 자가진단표 허위 판정 시 환수 예정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붙임 제4호 서식)
③ 가족 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	• 위임장(붙임 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 사본
④ 가족 대리 신청 (현장 방문 신청에 한함)	• 위임장(붙임 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구 분	증 빙 자 료
⑤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6~8월)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20년 6~8월 기간 중 현금 매출 증빙서류 - 현금매출확인서(붙임 제5호 서식) - 통장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은행 직인(날인) 필수),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 POS 현금 매출액 등 * 수기 작성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이며, 허위 기재 판정 시 지원금 환수
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 설립 인증서 등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中 1
⑦ 합기도 체육도장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19.12.26)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 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장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
⑧ '20.6.1 이후 개인→법인 전환 사업제	• 폐업사실증명(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붙임2 신청서식

□ (제1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 (제2호)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제3호)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4종)

□ (제4호) 통합 위임장

□ (제5호) 현금 매출 확인서

□ (제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 (제7호) 이의 신청서

□ (제8호) 지급변경 신청서

□ (제9호) 서류보완 신청서

<제1호 서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필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 해당 □ 칸에 "√" 표시

구분	신청유형 (지원 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휴대폰번호	( ) -
	업태		종목	
신청유형 (필수사항)		□ 공동대표(법인 포함) □ 가족 대리신청 □ 가족명의계좌 수령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합기도장('20.6.1~26 개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 사업체 □ 법인전환('20.6.1 이후) □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선택사항)		□ '20년 창업자 중 현금매출액 누락자(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입금계좌 (가족명의계좌 수령 희망 시 위임장 제출)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_____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며, **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0년 _____월 _____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 **본인 신분증 필참**

필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통장사본 3.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등 동의서(제2호 서식) 4.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제3호 서식)
해당시	1.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 위임장(제4호 서식) 2. (가족 대리 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가족 명의 계좌 신청 시)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인증서 등 확인서류 4. (특고 관련 직종 사업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인서 또는 반납 확인서, 자가진단표(제6호 서식) 5. ('20.6.1~26 개업한 합기도장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6. (현금매출 누락분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현금 매출 확인서(제5호 서식) 및 해당 증빙자료 7. ('20.6.1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2호 서식>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새희망자금 지원관련 적격여부 판단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새희망자금 취급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한은행,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한 민간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개업일, 매출액 및 매출증빙관련 서류 일체, 업태/종목, 지급액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새희망자금 취급 지자체
2.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부과확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동의 □미동의)**

고유식별정보 동의서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3호 서식>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4종, 필수)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2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 중복수혜 금지

- 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표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복수혜금지 대상]

기관	명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은 해당 지원금 수령자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 or 반납확인서 제출시에만 지급 가능(세부내용 고용노동부 문의)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3 새희망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4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4호 서식> 통합 위임장(해당 시)

통합 위임장

※ 위임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임 포함) □ 미성년자 □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위임하는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위임받는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가족명의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5호 서식> 현금 매출 확인서(해당 시)

현금 매출 확인서

※ '20년 창업자에 한하여 현금 매출 신고예정액 작성

1. 사업자 현황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 2020년 창업자에 한함)
사업장 연락처		휴대폰번호	
사업장주소			

2. 2020년 6~8월 현금 매출액 및 입증서류

구분	현금 매출액*	입증서류**
2020년 6월	( )원	
2020년 7월	( )원	
2020년 8월	( )원	

* 국세청 신고 예정 현금매출 작성

** 현금매출 인정 자료 : ①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②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
③ POS 현금 매출액

3. 제출 전 확인 사항

- 상기 현금 매출액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진 신고하여야 함
- 상기 현금 매출액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허위 판정 시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임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국세청장 귀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주의사항 : ①위 기재한 매출액은 현금 매출액이며, 기 신고된 국세청 매출액(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이 포함되어 20년 6월·7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8월 매출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새희망자금 지급불가** ②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현금 매출액 차이 발생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6호 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해당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 **특수형태근로종사장(이하 '특고'), 영세 자영업자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연번	내용	확인 (O, X)
1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2	본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3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회사(업체), 발주처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며 매출이 발생합니까?	
4	특정 회사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습니까?	
5	(화물차주인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에 해당하는 4개 품목을 운송하십니까?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참고) 산재보상법 제125조**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판단기준**

① 2번 또는 3번 해당 시 →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신청

② 4번 또는 5번 해당 시 → 특고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신청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제7호 서식> 이의 신청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 신청서

※ 부지급 통보의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온라인 및 지자체 접수처에 제출

구분	신청유형	□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새희망자금 신청 불가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

신청인				
	접수번호[1]		지원 불가 통보일	
	성 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상기 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불가 통보 또는 신청불가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사유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 첨부서류 :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새희망자금 신청후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에서 확인가능

<제8호 서식> 지급 변경 신청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변경 신청서

※ 지급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 사업체 또는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상기 본인은 지급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사업체 및 유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지원 유형 (지원 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변경 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지원 유형 (지원 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해당 업종 (택 1)	① 헌팅포차 ④ 단란주점 ⑦ 뷔페 ⑩ 실내집단운동 ⑬ (수도권) 학원 ⑯ (수도권) 직업훈련기관 ⑲ (수도권) 휴게음식점	② 감성주점 ⑤ 콜라텍 ⑧ 대형학원 ⑪ 실내스탠딩공연장 ⑭ (수도권) 독서실 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⑳ (수도권) 제과점	③ 유흥주점 ⑥ 노래연습장 ⑨ 직접판매홍보관 ⑫ PC방 ⑮ (수도권) 스터디카페 ⑱ (수도권) 일반음식점 ㉑ (수도권) 커피·음료 등 프랜차이즈 전문점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9호 서식> 서류 보완 신청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서류보완 신청서

※ 지자체 접수처를 통해 새희망자금 신청후 소진공검증단으로부터 자료보완 문자통보를 받은 경우(온라인 신청 건은 불필요)

신청인	성 명		휴대폰 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보완서류명			

상기 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후 통보받은 보완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보완하여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사유 추가설명 *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 첨부서류 : 수정·보완 통보받은 서류 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